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4월 15일

나. 발 의 자 : 김재우, 권재욱, 김낙관, 김택호, 송용자, 안장환
이지연, 장미경, 장세구, 홍난이 의원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5월 7일

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재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행정환경 및 관련 법규들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구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시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 그 활용범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4조제2항)

- 자문인의 위촉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토록 함(안 제4조제3항)
- 의회 사무보조직원 및 자문인의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4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제5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상 호

- 본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시 관련내용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는 것은 최근 시의회 업무의 다양화·다변화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